



[금융기관결재용]

담당자	확인자

**유안타증권 주식회사 (귀중)**

■ 신청자(가입자) 기본정보

가입자명	(서명 또는 인)	입사일	
생년월일		최종 중간정산일	
연락처		중도인출 기준일 (최근 부담금 납입 종료일)	

■ 중도인출 사유 선택 및 확인서

해당사항에 체크

주택구입: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

[무주택 확인 서약서]

본인은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명의의 소유 주택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주택임차: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(임차보증금) 부담하는 경우

[무주택 확인 서약서]

본인은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명의의 소유 주택이 없으며, 현재 근무하는 회사(사업장)에서 전세금(임차보증금)으로 중도인출을 받은 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[공동거주 확인 서약서(세대원 명의로 계약한 경우)]

본인은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함에 있어, 전세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(배우자 및 직계가족, 동거가족)으로 해당 전세계약 주택에 함께 거주함을 확인합니다. \*첨부서류: 가족관계증명서(발급일 3개월 이내)

6개월 이상 요양: 연간 임금총액의 12.5%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

[의료비 본인 부담 확인서 및 실손의료보험 미청구 확인]

본인은 가입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,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면서 연간 총 급여의 12.5%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한 사유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함에 있어,

1. 제출한 의료비 영수증은 진단서 상의 병명(요양)으로 지출한 의료비만을 포함하며,
2.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 받은 금액을 제외 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회생절차: 『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(단, 5년 이내)

파산선고: 『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(단, 5년 이내)

천재지변 등: 태풍,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

만약 확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, 발생하는 제반사항의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되며  
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.      가입자: \_\_\_\_\_ (서명 또는 인)

■ 중도인출 신청 기본정보

해당사항에 체크

신청금액	<input type="checkbox"/> 전액인출(100%)
수령계좌	금융기관명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계좌번호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예금주명:

상기 가입자의 중도인출 사유를 증명하며, 청구내용 및 퇴직급여 수령계좌가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    년    월    일

법인(단체)명 :

법인인감  
또는  
사용인감

다음페이지 제출서류 확인

# 제출서류 안내

·사유별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
중도인출 사유	제출서류
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구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(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)</li> <li>•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(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, 제출용)</li> <li>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온라인 발급분 사용불가) -기간: 직전연도~신청연도(2차년도), 세목: 재산세(주택), 발급지역: 전국자치단체로 지정하여 '과세사실 없음'으로 발급</li> <li>•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분양(공급)계약서 사본 -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 용도가 '주거용'인 경우에만 가능</li> <li>• 매매(분양)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(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, 제출용)</li> <li>• 계약금 또는 중도금 영수증 사본(이체내역서 등)</li> <li>• 수령계좌 통장사본 또는 계좌확인서</li> </ul>
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거목적의 전세금 (임차보증금) 부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(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)</li> <li>•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(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, 제출용)</li> <li>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온라인 발급분 사용불가) -기간: 직전연도~신청연도(2차년도), 세목: 재산세(주택), 발급지역: 전국자치단체로 지정하여 '과세사실 없음'으로 발급</li> <li>• 전세(임대차)계약서 사본</li> <li>• 전세(임대차)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(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, 제출용)</li> <li>• 계약금 또는 전세금(임차보증금),잔금 지급 영수증 사본(이체내역서 등)</li> <li>• 수령계좌 통장사본 또는 계좌확인서</li> </ul>
6개월 이상 요양 (연간 임금총액의 12.5%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병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(의료기관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문서,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의료행위가 입증되는 서류_장기요양기관에서 발급된 의사소견서, 장기요양안정서 포함)</li> <li>• 의료비 영수증(진료비계산서, 약제비계산서,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등 직전 1년간 의료비 지출합계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.5% 초과해야 신청 가능)</li> <li>• 직전년도 소득증빙서류(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급여명세서 등 임금총액을 산정할 수 있는 서류)</li> <li>• 부양가족의 요양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(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)</li> <li>• 수령계좌 통장사본 또는 계좌확인서</li> </ul>
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법원 결정문 사본</li> <li>• 수령계좌 통장사본 또는 계좌확인서</li> </ul>
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법원 결정문 사본</li> <li>• 수령계좌 통장사본 또는 계좌확인서</li> </ul>
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확인자료 (피해정도가 50%이상이어야함)</li> <li>•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적피해 여부 확인: 입원사실 확인서 등</li> <li>• 부양가족 피해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(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)</li> <li>• 수령계좌 통장사본 또는 계좌확인서</li> </ul>